

##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, 의안의 제출·발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조문 변경 개정 (안 제1조, 제14조, 제70조, 제82조)
- 나. 의안 제출·발의 사항의 명확화(안 제19조)
- 다. 띄어쓰기, 맞춤법 적용 및 용어순화 등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20.~1. 27.(8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 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규칙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| 의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1. 조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안 |    |
| 2.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조문         | 의견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3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<p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23년 1월 일</p> <p>의견 제출인 주소<br/>(전화 : )<br/>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담양군의회 의장 귀하</p> |              |    |

##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의장”을 “담양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후단 중 “권익 신장”을 “권익신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후단 중 “변경 할때또한”을 “변경할 때 또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”를 “법 제72조”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 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
2.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
3.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

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을때

제1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때에는의 회운영위원회”를 “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”로,  
“아니할때”를 “아니할 때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단서 중 “안전에대하여는제안자”를 “안전에 대하여는 제안  
자”로, “대하여는의결”을 “대하여는 의결”로 한다.

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  
다.

제36조제1항 중 “그안전”을 “그 안전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전단 중 “회의록이배부된”을 “회의록이 배부된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 제목 “(회의록의 배부및 공개)”를 “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”로  
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배부 및공개되는”을 “배부 및 공개되는”으  
로 한다.

제51조 중 “동의자외”를 “동의자 외”로 한다.

제54조 중 “위원아닌”을 “위원 아닌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2제2항 중 “제시하여다른”을 “제시하여 다른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심사하기위하여”를 “심사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 
제2항 중 “참고사 항을기재한”을 “참고사항을 기재한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3항 중 “하며,군수”를 “하며, 군수”로, “충실을위하여”를 “충실  
을 위하여”로, “위원장에게사전”을 “위원장에게 사전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중 “의장 에게제출”을 “의장에게 제출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, “정하여답변서”를 “정하여 답변서”로 한다.

제78조제1항 중 “수를정하여”를 “수를 정하여”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1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## 2. 술기운이 있는사람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7조”를 “법 제99조”로 한다.

제83조제2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차기의회의집회일”을 “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</u>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3조에 따라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제3조(의석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<u>의장이</u>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의석배정) ① -----<br>-- <u>담양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<u>권익 신장</u> 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  | 제5조(선서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<u>권익신장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3조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(개의)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한다. 이를 변경 할때또한 같다.  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수 있다.

③ (생략)  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. --- 변경할 때 또한 --.  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법 제72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  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
2.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



제19조의2(의안의 제출시기) 준수

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 
서 처리할 의안은 따로이 법령  
이나 조례등에서 규정된 것을  
제외하고는 본회의 개의 7일전  
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  
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  
다.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 
소관 상임위원회의동의를 얻어  
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.

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  
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  
지 아니한 때에는의 회운영위원  
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  
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 
니할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  
원회를 결정한다.

제25조(안건심의) ① 본회의의 안  
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 
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

3.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 
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  
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 
급박한 사정이 있을때

<삭 제>

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(현행과  
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때에는 의회운영위원  
회-----  
----- 아  
니할 때-----  
-----.

제25조(안건심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

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8조(발언의 허가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제36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.

② (생략)

제4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

-----  
--. -----  
-----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-----  
-----  
-- 대하여는 의결-----  
-----  
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발언의 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.

제36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 그안건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-----  
----- 회의록이 배부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를 변경할수는 없다.

② (생 략)

제48조(회의록의 배부및 공개) ①  
~ ③ (생 략)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을 게재할 수 있다.

⑤ (생 략)

제51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54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.

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 (생 략)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다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 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배부 및 공개되는 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----  
-----  
----- 동의  
자 외 -----  
-----.

제54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----- 위원 아닌 -----  
----.

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제시하여 다

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  
여야 한다

③ (생 략)

제56조(공청회) ① 위원회는 중요  
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  
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  
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  
식·경험이 있는자 등(이하 “진  
술인”이라한다)으로부터 의견  
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  
는 안전·일시·장소·진술인  
·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 
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 
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·  
② (생 략)  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 
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  
무원은 출석·답변 하여야 하  
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  
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  
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  
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 
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

른 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공청회) ① -----  
-----  
----- 심사하기 위하여 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참고사항을 기재한  
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·  
② (현행과 같음)  
③ -----  
-----  
----- 하  
며, 군수-----  
-----  
----- 충실을 위하여 -----  
-----  
----- 위원장

에게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제69조(사직)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 에게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.)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략)

제78조(방청권의 교부및 기재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과장이 그 수를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에게 사전 -----  
-----  
-----.

제69조(사직) ① -----  
-----  
----- 의장에게 제출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----- 법 제91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정하여 답변서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8조(방청권의 교부및 기재) ① -----  
----- 수를 정하여 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  
대한 자

2. 주기가 있는자

3. 정신이 이상이 있는자

4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 
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 
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  
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  
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 
위원회에 회부 한다.

② (생 략)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 
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 
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 
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 
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7  
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 
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 
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 
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  
에게 제출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제83조(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 
시한) ① (생 략)

1. -----  
-- 사람

2. 술기운이 있는사람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  
----- 법 제98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---- 법 제99  
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83조(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 
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<u>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</u>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p> |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 -----<br/>----- <u>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</u>-----<br/>-----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